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4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복기왕 · 어기구 · 박용갑  
이상식 · 서삼석 · 김영배  
조계원 · 부승찬 · 임호선  
김우영 · 이재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

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kWh당 요금, 기본요금 또는 시간요금 부과 여부, 그 밖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등 이용자가 요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9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자

11. 제9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충전요금을 반영하여 표시하

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 ③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9. 제9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자

11. 제9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충전요금을 반영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